## 학교규칙 개정(안) 신구 대조표

기존 학칙	학칙 개정안(2022.11.)
	(신설)
	제38조(학업중단 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 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
	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38조(학칙개정 절차)	제39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 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	① 공(사)립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
(이하"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 할 수 있 다.	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제38조(학칙개정 절차)	제39조(학칙개정 절차)
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b>학생 생활에 관한</b>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6조에 따라 <b>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b>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제38조(학칙개정 절차)	좌동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	

기존 학칙	학칙 개정안(2022.11.)
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b>(신설)</b> 제39조(학칙개정 절차)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8조(학칙개정 절차)	제39조(학칙개정 절차)
④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	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
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